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군 보

정기 제468호 2021. 8. 17(화)

훈령

장수군 훈령 제 590호	장수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	1
장수군 훈령 제 591호	장수군 공무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11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21- 857호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
장수군 공고 제 2021- 858호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
장수군 공고 제 2021- 867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장수군 공고 제 2021- 868호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43
장수군 공고 제 2021- 874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장수군 공고 제 2021- 877호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장수군 공고 제 2021- 885호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5
장수군 공고 제 2021- 900호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5

고시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고시 제 2021- 1호	장수군 환경정비구역 지적 및 지형도면 고시	82
---------------------------	-------------------------	----

공고

장수군 공고 제 2021- 870호	공유재산(장수 가공제품 홍보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95
---------------------	-----------------------------------	----

회 람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훈령 제590호

장수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

장수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8월 1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장수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수군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수군수가 성희롱 · 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희롱 · 성폭력”을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③ 군수는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위자”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 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장수군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종전의 제6조) 제2항 전단 중 “고충상담창구”를 “군수는 고충상담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건”을 “사건(2차 피해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을”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 및 2차 행위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를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자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 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피해자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를 “(피해자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등”을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휴가를 주는”을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을 분리, 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 등”을 “피해자”로, “대해여”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한”을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집단”을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를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로, “하여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명 이상 10명이내”를 “6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 ⑦ 제14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본인과 직·간접적”을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17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재발방지대책”을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 · 성폭력 조사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 · 성폭력 조사 결과

- (1) 성희롱 ·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장수 군수 (인)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침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희롱 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로 내용 추가
(안 제1조 ~ 안 제19조)
- 나.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의 책무 신설(안 제6조)
- 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의 역할(2차피해 방지, 비밀유지 등),
조사 시 전문가 참여 등의 내용 신설(안 12조 제5항~ 7항 신설)
- 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상설화(안 제16조)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추진상황 수검 시 지적사항 개선
- 마.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피해자 치료 지원, 조직문화
개선 대책 수립 내용 신설(안 제19조 제 3항 ~ 제5항 신설)

장수군 훈령 제591호

장수군 공무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장수군 공무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8월 17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제3호의 장수군 공무원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및 용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장수군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가족 거주지 등 주거용 주택이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② 법령에 따라 군수가 당연직 회장인 단체에 소속된 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히 입주할 수 있다.

③ 입주 용도는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합숙형과 혼자 거주하는 독신 형으로 한다.

제3조(입주기간 및 입주자 결정)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에 의거 채용된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2. 신청자 중 입주일 기준 임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추첨을 통한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입주절차)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허가) 관사의 입주는 입주허가신청에 의하여 입주자를 결정하고 군수가 이를 협의한다.

제6조(입주자의 사용료 부담) 관사에 입주하는 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의거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관사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보일러 운영비
2. 전기 및 전화요금
3. 수도요금
4. 오물수거료
5. 입주자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경비

제8조(입주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관사 입주허가를 취소한다.

1. 공무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때
3. 제12조에 따른 입주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

적 운영 ·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허가를 취소할 필요
가 있을 때

제9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호실별 고
유번호와 입주자의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 관
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10조(인계 · 인수 등) ① 제9조에 따라 관사의 입주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입
주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사용 호실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 사용 호실을 인도할 때에는 입주자는 그날까지 발생한 관
사 운영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
음 입주자 또는 관사 운영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사용호실의 시설 및 물품현황
2. 운영비 정산 상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변상조치) 관사 입주 사용 중 관사 시설과 비품 등을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및 분실하였을 때는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치운영위원회) ① 입주자는 자율적으로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운영위원회는 입주에 불편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담당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공무원관사 입주허가 신청서

1. 입주신청서: 소속 직급 성명

입사년월일(재직기간)

2. 사용기간:

위와 같이 「장수군 공무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서약서 1부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관 사 소재지 :

위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장수군공무원관사관리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염수한다.
2. 허가자 이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입주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사의 사용호실을 명도한다.
5. 관사의 관리비는 규정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의 사용 호실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되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의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사용 호실을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급 성명 ☺

장 수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 관리번호

위 치		입 주 일 자		입 주 우선순위
면적 (m ²)	대지 :	구 조		
	건물 :			

입 주 허 가 내 역

입 주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1. 제정이유

-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군의 후생복지시설인 관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공무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신설

장수군 공고 제2021- 857호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설로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정비사항을 상위법령의 근거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수군 가로수 및 관리조례의 상위 근거법령
- 안 제1조, 제2조 1호, 제3조 제1항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산림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과

(전화 : 063-350-2448, FAX : 063-350-571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과 산림자원팀(전화: 063-350-24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등”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훼손자”라 함은”을 ““훼손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담금” 이란”을 ““부담금”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자가 각종 공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수관리시설물(이하 “가로수 등”이라 한다)의 원상복구 비용발생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2. “훼손자”라 함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망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일체를 말한다. <p>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2. “훼손자”란 3. “부담금”이란 <p>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p> <p>② (현행과 같음)</p>

불임 관계법령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1- 858호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삭제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설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인용 법률에 맞게 제명 변경
 - (제명)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
- 나. 상위 인용 법률에 맞게 조문 내용 변경
 - 상위 인용 법률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과
(전화 : 063-350-2448, FAX : 063-350-571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과 산림자원팀(전화: 063-350-24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를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장수군 도시립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장수군 도시립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립등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립등의 조성 · 관리에 필요하다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락) ② 위촉위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립 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2. · 3. (생 락)</p> <p>제14조(간사) ① (생 락) ② 간사는 도시립등의 조성 ·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생 락)</p>	<p>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p> <p>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 도시숲등 ----- -----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 도시숲등----- -----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3조제3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숲 -----. 2. · 3. (현행과 같음) <p>제14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숲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현행과 같음)

불임 관계법령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1-867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중 고엽제 관련 환자(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증 2세환자)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유족의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2021. 4.) 됨에 따라 법률명 변경(안 제3조 제1항제6호)
- 나.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사망시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을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안 제3조제1항제7호)

다. 법령 표기 방식에 맞게 자구 수정(별지2호서식-호국보훈수당지급신청서)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주민복지실)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팩 스 : 063-350-5703
- E-mail : kmslaw@korea.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전화 063-350-2071)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조례 제 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 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 세환자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보훈번호	
계좌 번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념 월 일

신청인(성명) : (인)

본인은 호국보훈수당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만약 중복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호국보훈수당 업무 담당자 (☎350-2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5. (생 략)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 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3조(지급대상)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4조-----</p> <p>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 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 자</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췌서**「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 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

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 ·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 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 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 · 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벼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텔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혀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礙).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 1. 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 1. 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麻痺脊椎病變)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장수군 공고 제2021-868호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1971년,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장수군) 보훈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기준 전라북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안 발생시 장수군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그 유사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문(死文)화 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주민복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팩 스 : 063-350-5703
- E-mail : kmslaw@korea.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전화 063-350-2071)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최종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1 - 874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장수군 농촌소득금고 사업(2000년 11월 이전시기) 및 경영회생사업 미상환 농가 중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대환대출 제도로 상환기 일을 연장함으로써 연체이자의 농가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미상환 농가에게 미상환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를 대환대출 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는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시기(2000년 11월)의 농촌소득사업과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로 한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의견제출할 곳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 063-350-2361, 팩스 : 063-350-5714)
-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담당자(전화 : 063-350-23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별 대환대출) ①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미상환자에게 원금과 연체이자를 대환대출 할 수 있다. 단, 대출금은 체납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② 대환대출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2000년 11월 이전 장수군농촌소득사업의 대상자중 미상환자
 2. 장수군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8조의2(특별 대환대출)</u> ① 금융권에서대출가능한 미상환자에게 원금과 연체이자를 대환대출 할 수 있다. 단, 대출금은 체납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p> <p>② 대환대출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2000년 11월 이전 장수군농촌소득사업의 대상자중 미상환자</p> <p>2. 장수군경영희생사업의 미상환자</p>

장수군 공고 제 2021-877호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금후계획

1) 입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 2021. 8월 중

2) 입법예고 : 2021. 8월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9월 중

4) 조례안 의회 상정 의뢰 : 2021. 9월 한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문화체육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 팩 스 : 063-350-5713
- E-mail : ojh4001@korea.kr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전화 063-350-2337)
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회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

의 모임을 말한다.

9.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3조(체육의 시책과 권장)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장수군 체육진흥협의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체육회장
2. 군 공공스포츠클럽 회장
3. 군 의회 의원

4. 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5.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기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12조(체육진흥사업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3. 기관·단체 등 직장 체육활동 활성화
4.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
5.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6. 도민체전 종목 육성
7. 어르신·일반·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리그 운영
9.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체육교류활동 및 체육대회 활성화
11. 국제·전국 및 시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12. 군 및 읍·면 체육대회 활성화
13. 전문체육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유치 및 교류
14. 운동경기부 육성
15.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6.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제13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제4조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장수군체육회,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8조(보고 · 검사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

제 장부 · 서류 · 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 ·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체육의 시책과 권장)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p> <p>제3조(체육의 시책과 권장)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p>
<p><u>〈신 설〉</u></p>	<p>제2장 장수군 체육진흥협의회</p> <p>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체육회장 2. 군 공공스포츠클럽 회장

현 행	개 정 안
	<p><u>3. 군 의회 의원</u></p> <p><u>4. 군 체육업무 담당과장</u></p> <p><u>5.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기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u>위촉위원</u>”이라 한다)</u></p>
<u>〈신 설〉</u>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u>〈신 설〉</u>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u></p>
<u>〈신 설〉</u>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4조 ~ 제7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p>제8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u>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및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따라 장수군체육회,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u> <u>2. 단체운영 기본경비</u> <u>3. 사무시설 임차료</u> <u>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u> <p>② <u>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u></p>	<p>제8조(회의) ① <u>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 <u>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u>협의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의결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제9조 ~ 제11조 (생 략)</u></p> <p>제12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p> <p><u>제13조 (생 략)</u></p>	<p>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p> <p>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6조 ~ 제18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p> <p>제19조(준용)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p> <p>제20조 (현행 제13조와 같음)</p>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최종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1-885호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시책사업인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 안 제14조의2
-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명시 : 별표신설
- 한누리전당, 장수누리파크, 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고려사항을 반영: 안 제5조

-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운영 관련 조항 및 단서 신설 : 안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운영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오탈자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63-350-2014, 팩스 : 063-350-5745)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전화 : 063-350-20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불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하는 자를”을 “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행 하기”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관한 활동10 문화 · 관광 ·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 · 관광 ·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를 “장수군자원봉사센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센터장은”을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로,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를 “경우는 응모한 사람”으로, “기타의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를 “그 밖의 경우는 응모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인에게”를 “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 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20인”을 “20명”으로, “과반수이상으로”를 “과반수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기타 자원봉사센터”를 “그 밖에 센터”로 한다.

제10조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원봉사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센터에”를 “센터에”로 한다.

제17조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제14조의2 관련)

시설명	사용대상
1. 장수한누리전당	◦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중 수영장 및 헬스장 1일 사용료
2. 장수누리파크	◦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3. 와룡자연휴양림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사용료
4. 방학동자연휴양림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사용료
5. 방학동가족휴가촌	◦ 「장수군 방학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에 따른 기타시설 사용료

※ 현장 결제 가능 시설에 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현행과 같음) 2. ----- 하는 사람을 -----. 3. ----- ----- 지원하기 ----- -----. 4. ----- ----- 수행하기 --- ----- -----.</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생 략)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신 설〉 11. ~ 15. (생 략)</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p> <p>1. ~ 8. (현행과 같음) 9. ----- 관한 ----- -----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 15. (현행과 같음)</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서 신설〉</p> <p>④ (생 략)</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 -----. 장수군자원봉사센터-----.</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p> <p>②(생 략)</p> <p>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p> <p>②(생 략)</p> <p>〈신 설〉</p> <p>③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p> <p>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p> <p>⑥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⑦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 ③(생 략)</p> <p>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p>	<p>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경우는 응모한 사람 ----- 그 밖의 경우는 응모한 사람 -----.</p> <p>②(현행과 같음)</p> <p>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법인에 -----.</p> <p>②(현행과 같음)</p> <p>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p> <p>④ ----- 1명-----.</p> <p>⑤ 센터-----.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p> <p>⑥ 제5항----- 따른 ----- 20명 ----- 과반수로 -----.</p> <p>⑦ 센터-----.</p> <p>⑧ 그 밖에 센터-----.</p> <p>제10조(센터의 지원) ----- 센터-----.</p> <p>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3개월-----.</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 자-----.</p>

현 행	개 정 안
<p>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의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신 설〉</p>	<p>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16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③ (생 략)</p> <p>제17조(실비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p> <p>③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p> <p>④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제16조(보험가입) ① ----- 센터 ----- ----- ----- -----.</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센터----- -----.</p> <p>3. ----- ----- ----- 센터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실비지급) 센터 ----- ----- -----.</p>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1-900호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장 수 군 수

1. 개정사유

-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의 명칭 및 일부 용어와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추진기구들이 전국 추진기구 명칭을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통일함에 따른 제명 및 내용 개정
(안 제1조 등)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원범위 내용 신설
(안 제16조)

-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지표'로 수정
(안 제3조 등)

3. 관계법령

- 「지속가능 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환경위생과장)
- 2) 팩 스 : 063-350-5718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전화 063-350-2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를 “장수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수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제28장과 「지속가능 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상호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간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의제21을”을 “지속가능발전지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제21이”를 “지속가능발전지표가”로, “매년”을 “2년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지표”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의제21과”를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의제21과”를 “협의회와”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의제21”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예향천리 마실길”을 “전북 1000리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0조 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장수군환경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논개고을 푸른장수21”을 실천하기 위하여 <u>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장수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u>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수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함은 UN환경개발회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 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상호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간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① 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u>지방의제21</u> 를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①----- ----- ---- <u>지속가능발전지표</u> 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속가능발전지표</u> ----- ----- <u>2년마다</u> ----- -----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장수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u>지방의제21</u> 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 ----- <u>지속가능발전지표</u> -----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 략)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 · 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p>제16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u>지방의제21실천협의회</u> 워크샵 지원 4. <u>예향천리 마실길 걷기행사를 위한 사업 지원</u> <p>5. · 6. (생 략) <u>〈신 설〉</u> <u>〈신 설〉</u></p> <p>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u>지방의제21전국협의회</u>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u> ----- ----- 5. --- <u>협의회와</u> -----</p> <p>제16조(경비의 지원) ----- ----- -----. 1. (현행과 같음) 2. <u>지속가능발전지표와 의제21</u>----- 3. <u>협의회</u> ----- 4. <u>전북 1000리길 걷기행사를 위한 사업 지원</u> ----- ----- 5. · 6. (현행과 같음) 7. <u>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u> 8.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u></p> <p>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 ----- ----- <u>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u> ----- ----- -----.</p>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고시 제 2021- 1호

장수군 환경정비구역 지적 및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번암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에 따른 지적을 고시하오니 일반인은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장 수 군 수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 : 번암면 상수원보호구역내 4개마을(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일시 : 2021. 07. 23.
3. 환경정비구역 지정 면적 : 144,738m²
4. 환경정비구역 지정 현황

대상 마을	면 적	오수 발생량	오수처리
번암면 4개 자연마을 (상동, 하동, 광대, 원지지)	144,738m ² (381필지)	95m ³ /일 발생	번암면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용량 500m ³ /일)

5.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세부지적은 편입토지조서 참조
6. 환경정비구역 지형 도면 : 붙임 참조

환경정비구역 토지조서

연 번	주 소	지 목	마 을 명	비 고
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667-2	대	하동	
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03-9	대	하동	
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05	대	하동	
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14	대	하동	
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14-1	대	하동	
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15-6	대	하동	
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81	대	하동	
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91	대	하동	
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92	대	하동	
1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93	대	하동	
1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94	대	하동	
1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95	대	하동	
1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99	대	하동	
1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00	대	하동	
1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03-4	대	하동	
1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86-1	대	하동	
1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86-3	대	하동	
1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04	대	하동	
1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05	대	하동	
2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29, 1130	대	하동	
2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2	대	하동	
2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3	대	하동	
2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4	대	하동	
2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1	대	하동	
2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41	대	하동	
2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6	대	하동	
2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7	대	하동	
2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8	대	하동	
2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45	대	하동	
3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8-1	대	하동	
3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6-6	대	하동	
3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6-1	대	하동	
3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6-2	대	하동	
3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6	대	하동	

3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5-1	대	하동
3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46	대	하동
3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46-1	대	하동
3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2, 970-1	대	하동
3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0	대	하동
4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9	대	하동
4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8	대	하동
4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7	대	하동
4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6	대	하동
4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5	대	하동
4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9	대	하동
4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80	대	하동
4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81	대	하동
4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82	대	하동
4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83-1	대	하동
5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2	대	하동
5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1	대	하동
5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3	대	하동
5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0	대	하동
5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59-1	대	하동
5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58	대	하동
5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53	대	하동
5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52, 951, 954, 955, 956	대	하동
5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40	대	하동
5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52-1	대	하동
6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45-1	대	하동
6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45	대	하동
6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46-2	대	하동
6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47	대	하동
6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46	대	하동
6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5	대	하동
6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48-1, 849, 854	대	하동
6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0	대	하동
6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1	대	하동
6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2	대	하동
7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3	대	하동
7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6	대	하동

7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63	대	하동
7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63-2	대	하동
7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5-1	대	하동
7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6-2	대	하동
7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6-4	대	하동
7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6-3	대	하동
7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62	대	하동
7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63-3	대	하동
8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64	대	하동
8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65	대	하동
8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66-1	대	하동
8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50-2	대	하동
8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9	대	하동
8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8	대	하동
8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7-1	대	하동
8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4	대	하동
8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3-1	대	하동
8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2	대	하동
9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6	대	하동
9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1	대	하동
9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1-1	대	하동
9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0	대	하동
9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7-1	대	하동
9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9-1	대	하동
9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8	대	하동
9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9	대	하동
9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29	대	하동
9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0-1	대	하동
10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3	대	하동
10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3-1	대	하동
10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35	대	하동
10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01-4	대	하동
10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382-7	대	하동
10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382-15	대	하동
10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382-16	대	하동
10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2-1	대	하동
10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1	대	하동

10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6	대	하동
11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4	대	하동
11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8-1	대	하동
11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9-1	대	하동
11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00-1	대	하동
11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91-4	대	하동
11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74	대	하동
11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03-1	전	하동
11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03-5	전	하동
11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35	잡	하동
11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46-2	답	하동
12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73-1	답	하동
12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4	답	하동
12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857	전	하동
12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28-2	답	하동
12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45	전	하동
12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098-1	답	하동
12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3-1	전	하동
12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95	전	하동
12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51-1	대	상동
12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04-1	대	상동
13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382-19	대	상동
13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382-10	대	상동
13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52-1	대	상동
13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53-2	대	상동
13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55-1, 756, 1382-2, 1382-3	학	상동
13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54	대	상동
13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55-3	학	상동
13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44	대	상동
13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743	대	상동
13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604	대	상동
14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59-1	종	상동
14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60-1	대	상동
14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60-3	대	상동
14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2	대	상동
14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1	대	상동
14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7	대	상동

14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3	대	상동
14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6	대	상동
14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8-1	대	상동
14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1-3	대	상동
15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1-1	대	상동
15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0-1	대	상동
15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2-1	대	상동
15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3-1	대	상동
15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4	대	상동
15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9-1	대	상동
15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8-1	대	상동
15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7-1	대	상동
15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4	대	상동
15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8-1	대	상동
16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9-1	대	상동
16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40	대	상동
16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64-4	대	상동
16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7	대	상동
16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1-1	대	상동
16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43	대	상동
16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44	대	상동
16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3-1	대	상동
16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8	대	상동
16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6	대	상동
17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0-1	대	상동
17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5-2	대	상동
17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49	대	상동
17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1	대	상동
17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2,453	대	상동
17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7	대	상동
17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5-1	대	상동
17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7-1	대	상동
17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6	대	상동
17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1	대	상동
18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4	대	상동
18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0-1	대	상동
18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9	대	상동

18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8-1	대	상동
18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5-1	대	상동
18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6	대	상동
18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8	대	상동
18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5-2	대	상동
18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3, 404, 1409-1	대	상동
18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7-1	대	상동
19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8-1	대	상동
19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11	대	상동
19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0-1	대	상동
19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1-1	대	상동
19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7	대	상동
19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3-1, 464	대	상동
19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2-1	대	상동
19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4	대	상동
19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3	대	상동
19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6	대	상동
20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2	대	상동
20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8	대	상동
20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7	대	상동
20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1-1	대	상동
20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1	대	상동
20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0-1	대	상동
20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4-1	대	상동
20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3	대	상동
20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5-1	대	상동
20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6-1	대	상동
21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1, 392	대	상동
21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2-3	대	상동
21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4-1	대	상동
21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2-1	대	상동
21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3	대	상동
21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90-1	대	상동
21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6	대	상동
21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32-1	대	상동
21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46	대	상동
21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9-1	대	상동

22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47-1	대	상동
22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0	대	상동
22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1-4, 422-1	대	상동
22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4	대	상동
22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3	대	상동
22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55	대	상동
22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00	대	상동
22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72	대	상동
22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73	대	상동
22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9	대	상동
23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6-1	대	상동
23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4-1	대	상동
23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7-4, 405-4	대	상동
23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5	대	상동
23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6-1	대	상동
23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8, 399	대	상동
23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7-2	대	상동
23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8-1	대	상동
23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97-1	대	상동
23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69-1	대	상동
24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5-1	대	상동
24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86	대	상동
24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86-1	대	상동
24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386-2	대	상동
24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94-1	대	상동
24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94	대	상동
24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94-2	대	상동
24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93-1	대	상동
24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93	대	상동
24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92	대	상동
25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48-2	답	상동
25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9-3	답	상동
25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21-1	답	상동
25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60-1	대	상동
25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62-2	대	상동
25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60-7	대	상동
25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60-4	전	상동

25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0	전	상동
25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79-1	전	상동
25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587-3	창	상동
26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68	전	상동
26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69	전	상동
262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70	전	상동
263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71	전	상동
264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74	전	상동
26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97	답	상동
266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7-2	답	상동
267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1	전	상동
268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6	전	상동
269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77	전	상동
27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10	전	상동
271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402	전	상동
27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21-6	대	원지지
27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05	대	원지지
27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04-1	대	원지지
27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46-1	대	원지지
27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46	대	원지지
27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36	대	원지지
27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36-3	대	원지지
27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36-4	대	원지지
28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77-1	대	원지지
28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1-1	대	원지지
28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1-4	대	원지지
28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3-1	대	원지지
28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0-1	대	원지지
28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5	대	원지지
28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1	대	원지지
28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79	대	원지지
28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9-2	대	원지지
28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8-4	대	원지지
29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8-2	대	원지지
29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9	대	원지지
29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3	대	원지지
29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6-2	대	원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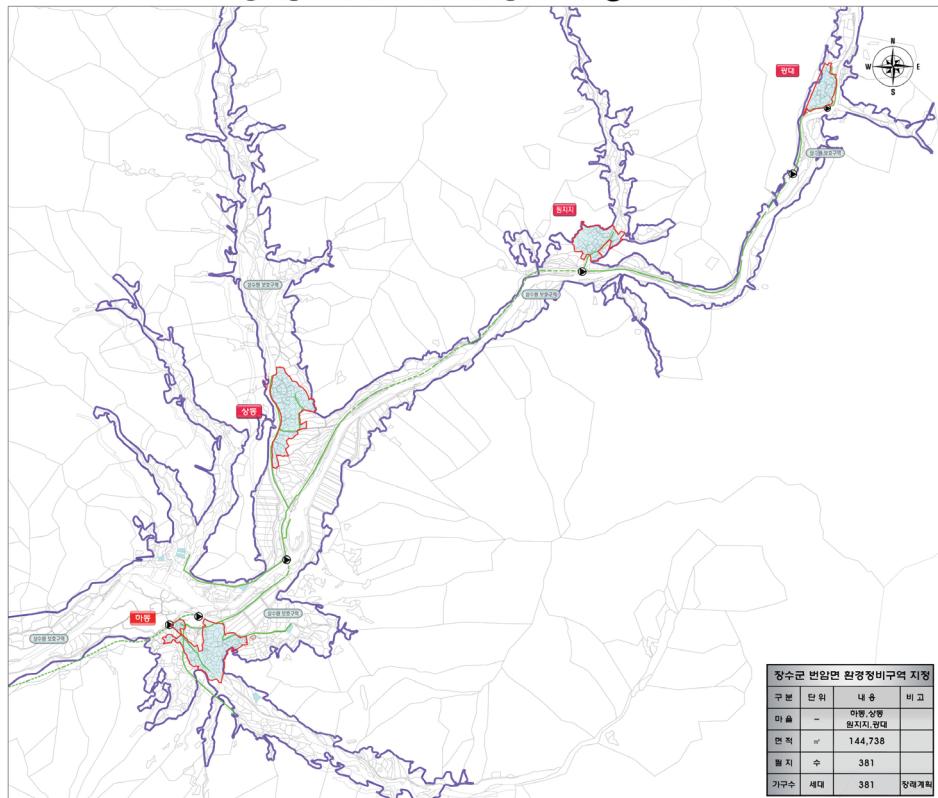
29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7-1	대	원지지
29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8-1	대	원지지
29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8-2	대	원지지
29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0	대	원지지
29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2	대	원지지
29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9-1	대	원지지
30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6-1	대	원지지
30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7-3	대	원지지
30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7-1	대	원지지
30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3	대	원지지
30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4-1	대	원지지
30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5-1	대	원지지
30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6-1	대	원지지
30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7-1	대	원지지
30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2	대	원지지
30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1	대	원지지
31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0-1	대	원지지
31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08-1	대	원지지
31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5	대	원지지
31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3	대	원지지
31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1-1	대	원지지
31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7	대	원지지
31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23-1	대	원지지
31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24-1	대	원지지
31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26	대	원지지
31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27	대	원지지
32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25-1	대	원지지
32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21	대	원지지
32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72-1	답	원지지
32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78-1	전	원지지
32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2	전	원지지
32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4	전	원지지
32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92-1	전	원지지
32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86-1	전	원지지
32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4	전	원지지
32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6	전	원지지
33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8	전	원지지

33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19	전	원지지
33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35-3	전	원지지
33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64-3	임	원지지
33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44-1	잡	원지지
33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44	잡	원지지
33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45	답	원지지
33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876-1	전	원지지
33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28-4	대	광대
33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25-1	대	광대
34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21-1	대	광대
34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04-1	대	광대
34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1165-1	대	광대
34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9-1, 719-2	대	광대
34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8-1	대	광대
34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5-1	대	광대
34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4	대	광대
34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20	대	광대
34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06-1	대	광대
34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59-1	대	광대
35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6-1	대	광대
35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08-1	대	광대
35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08-3	대	광대
35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09	대	광대
35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60-1	대	광대
35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61	대	광대
35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62	대	광대
35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66-1	대	광대
35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63	대	광대
35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1165-3	대	광대
36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58-1	대	광대
36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55-1	대	광대
36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56-1	대	광대
36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0-1	대	광대
36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53	대	광대
36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49-1, 650	대	광대
36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51	대	광대
36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47-1	대	광대

36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48	대	광대
36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70	대	광대
37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71	대	광대
37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78	대	광대
372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8-3	대	광대
373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28-1	전	광대
374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24-1	전	광대
37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69-14	임	광대
376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27	임	광대
377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3	전	광대
378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65	전	광대
379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667-1	전	광대
380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69-6	임	광대
381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2	전	광대

전체

환경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



범례

	지적선
	환경정비구역선
	환경정비구역 지정구역
	하수 암승관
	하수관
	하수 맨홀필프

지정권자 : 장수군수

지정일자 : 2021년 8월 일

고시년도 : 2021년 8월 일

고시번호 : 장수군 공고 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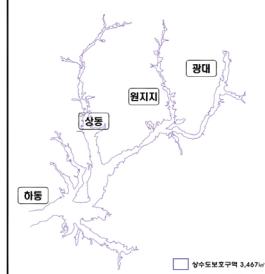
작성자 : 장수군수

작성년월일 : 2021년 8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장수군수

구 分	임안 및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직 위	상수도 팀	상수도 팀
직 명	담당 주무관	상무관
성 명	상수도시설관리	상수도 업무 전반
확인인	양종육	이선용

위치도



장수군 공고 제2021-870호

공유재산(장수 가공제품 홍보 판매장)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장수 가공제품 홍보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 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다.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건물면적	대부면적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용도	비 고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57-3일원	474.69㎡	127.61㎡ (건물1층일부)	금6,337,830원정 (금육백삼십삼만칠천팔백삼십원) ※ 부가가치세 별도	소매점	

※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일정

입찰공고	2021. 8. 6.(금)		
현장설명일	별도 설명회 없음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2021. 8. 9.(월) 10:00 ~ 2021. 8. 16.(월) 16:00		
입찰서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개찰일시	2021. 8. 17.(화) 10:00	개찰장소	장수군 입찰집행관 PC
계약기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3. 입찰참가 방법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최고가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가. 공고일 전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인 단체 및 법인, 가공업체

-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 한 자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하며, 미등록자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가. 본 건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영업이익은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타당성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점은 공인인증기관(한국전산원)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전자서명)한 시점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

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마. 본 입찰에 대리입찰(공동입찰)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상에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결정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사용료 결정방법

가.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연도부터의 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times \frac{\text{해당 연도의 재산가격}}{\text{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11.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 하시고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10:00~11:30, 오후 14:00~16:00(평일기준)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공고는 “온비드”의〈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낙찰자 제출서류

- 가. 사용허가신청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 제출
- 다. 주민등록증사본(원본지참) 1부
- 라.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 마.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바. 영업배상, 손해보험증서 각 1부
- 사. 계약체결 청렴이행각서 1부
- 아. 사업자등록증 1부

14.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불로 완납(선납)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됩니다.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영업개시일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사용허가조건

- 별지 허가조건 참조

16.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망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사용허가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는 온비드(<http://www.onbid.co.kr>),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에 동시에 공고 하였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 : 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 1588-5321

- 수신자부담 문의전화 : 080-347-5000(이용시간 09:30 ~ 17:30)

- 사용·수의허가 재산에 관한 기타사항 문의

-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3)350-2836(생활자원팀 담당자 홍지희)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 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

-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

장 수 군 수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